

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

(강철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104호
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15.

발 의 자 : 강철우,이성복,안철우 의원

1. 제정이유

-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 -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 -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 -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
-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헌옷 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헌옷 수거함 관리·운영자 지정 및 운영·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 - <운영·관리자 업무>
 -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 -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 -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 -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○ 「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14년 추경 반영계획

다. 합 의 : 녹색환경과와 합의되었음

라.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 11. 15. ~ 11. 20.

(나) 예고결과

- 의 견 자 : 한국폐자원재활용협의회 경남 거창군지회 지회장

- 의견내용 : 영세한 행상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반대
의견

마. 비용추계서 : 생략

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3.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3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4조(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)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헌옷 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 등) 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·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·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

보하여야 한다. 또한 관리·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·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·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제6조(현웃수거함 관리·운영자 지정 및 운영·관리자 업무 등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현웃 수거함의 관리·운영자를 지정하고, 관리·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현웃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2. 현웃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3. 현웃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4.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

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